광주첨단2지구 사랑으로 부영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국민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2.10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62-959-4025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국민주택	광주광역시 1년이상 계속거주자 (2024.02.10. 이전부터 계속 거주)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계속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02.10.(월)	25.02.20.(목)	25.02.21.(금)	25.02.27.(목)	25.03.08.(토)~ 25.03.09.(일)	25.03.10.(월)~ 25.03.12.(수)

1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구)임대주택법」 제2조 2의2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공급된 주택(사용승인 2013.4.18.)으로, 임대의무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우선분양전환 후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제4항(부칙 <법률 제17734호, 2020. 12. 22.>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3제2항에 의해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종전 임대주택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우선분양전환 후 분양전환 포기세대의 일반분양으로 일부세대에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기존 임차인과 상호 협의 후 계약만기가 도래되어 세대가 퇴거 한 후 실입주가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13년 4월 18일(20개동, 건물연수 11년경과) 사용검사된 종전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 10년이 경과 되어 우선분양전환 후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이며, 공급금액은 광주광역시 북구청 공동주택과-14578호 (2023.12.06)로부터 분양전환 승인된 금액이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외부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 상태대로 분양하는 주택이므로 당첨자 본인이 주택개방일(※당첨자에 한함, 임차인이 있는 세대의 경우 방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에 세대 내 시설물 등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물(보일러,벽지,장판,싱크대,세대열쇠등)의 파손, 노후, 미비 및 청소 불량 등을 사유로 하자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설치한 부합물은 당사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분양가격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2.1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1순위(6개월 이상, 매월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가입
세대주 요건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1순위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매월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본 주택은 국민주택으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인 이상이 중복청약하여 1인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에 한해 중복청약이 허용되며, 부부가 중복청약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사람이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사람은 무효 처리됩니다(분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가 유효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순위순차제를 적용하여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순위순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rangeuro.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예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국민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민영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O		X				

2 단지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2.10.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10.)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4.02.10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당사 홍보관에는 별도 견본주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세대방문기간	계약체결
일 정	2월 20일(목)	2월 21일(금)	2월 27일(목)	3월 8일(토) ~ 3월 9일(일)	3월 10일(월) ~ 12일(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영업소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287, 상가동 204호(풍영리버빌아파트)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니며, 본 아파트는 국민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의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국민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분 및 그 세대에 속한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화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 재 금 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 부 세 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청약관련 문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는 해당 문의사항의 성격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또는 사업주체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청약시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및 청약내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청약자는 반드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숙지하기 바랍니다.

구 분	관련 문의 사항	연락처 및 유의사항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신청 방법, 청약절차, 당첨자선정 및 추첨 등	1644-7445(청약홈 콜센터)
㈜ 부영주택	단지 관련사항, 세대개방일정,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금, 잔금 등	062)959-4025(부영주택 광주영업소)

■ 2024.12.1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3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북구청 공동주택과 -3521호(2025. 02. 0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166 (신용동, 광주첨단2지구사랑으로부영)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2~25층 20개동 총 1,772세대 중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176세대

■ 입주지정기간 : 2025년 3월 13일 ~ 4월 13일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국민 주택	2025 -000015	01	060.4624	60	60.4624	20.7625	81.2249	26.9939	108.2188	39.9112	135	135	11
		02	084.3616	84	84.3616	24.1135	108.4751	38.6653	147.1404	55.6870	41	41	1
	합 계										176	176	12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금액-원)

주택형 (약식표기)	동	호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현임차인임대조건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만기일
60	0101	0102	43,935,408	156,564,592	200,500,000	20,050,000	180,450,000	-	-	
		0203	45,250,183	161,249,817	206,500,000	20,650,000	185,850,000	70,640,000	431,600	2025-08-25
		0402	46,784,088	166,715,912	213,500,000	21,350,000	192,150,000	-	-	
		0404	45,688,441	162,811,559	208,500,000	20,850,000	187,650,000	-	-	
		0801	47,660,604	169,839,396	217,500,000	21,750,000	195,750,000	-	-	
		1001	47,660,604	169,839,396	217,500,000	21,750,000	195,750,000	157,040,000	-	2025-03-13
		1303	48,756,250	173,743,750	222,500,000	22,250,000	200,250,000	149,670,000	48,900	2025-12-02
		1903	48,756,250	173,743,750	222,500,000	22,250,000	200,250,000	-	-	
		2103	48,756,250	173,743,750	222,500,000	22,250,000	200,250,000	-	-	
		2401	47,660,604	169,839,396	217,500,000	21,750,000	195,750,000	157,040,000	-	2025-09-11
		2501	43,935,408	156,564,592	200,500,000	20,050,000	180,450,000	-	-	
	0102	0101	44,592,795	158,907,205	203,500,000	20,350,000	183,150,000	-	-	
		0202	47,112,781	167,887,219	215,000,000	21,500,000	193,500,000	-	-	
		0203	47,112,781	167,887,219	215,000,000	21,500,000	193,500,000	157,040,000	-	2025-10-17
		0801	49,632,767	176,867,233	226,500,000	22,650,000	203,850,000	-	-	
		1202	50,728,413	180,771,587	231,500,000	23,150,000	208,350,000	-	-	
		1203	50,728,413	180,771,587	231,500,000	23,150,000	208,350,000	-	-	
		1204	49,632,767	176,867,233	226,500,000	22,650,000	203,850,000	157,040,000	-	2025-08-11
		1603	50,728,413	180,771,587	231,500,000	23,150,000	208,350,000	157,040,000	-	2025-06-08
		2001	49,632,767	176,867,233	226,500,000	22,650,000	203,850,000	-	-	
		2004	49,632,767	176,867,233	226,500,000	22,650,000	203,850,000	157,040,000	-	2025-08-25
		2102	50,728,413	180,771,587	231,500,000	23,150,000	208,350,000	-	-	
		2204	49,632,767	176,867,233	226,500,000	22,650,000	203,850,000	-	-	
		2504	45,688,441	162,811,559	208,500,000	20,850,000	187,650,000	157,040,000	-	2025-09-11
	0103	0104	45,359,748	161,640,252	207,000,000	20,700,000	186,300,000	-	-	
		0204	46,893,652	167,106,348	214,000,000	21,400,000	192,600,000	-	-	
		0504	48,865,815	174,134,185	223,000,000	22,300,000	200,700,000	70,640,000	431,600	2025-06-07
		0604	49,413,638	176,086,362	225,500,000	22,550,000	202,950,000	-	-	
		1004	50,399,720	179,600,280	230,000,000	23,000,000	207,000,000	-	-	
		1204	50,399,720	179,600,280	230,000,000	23,000,000	207,000,000	149,670,000	48,900	2025-10-31
		1702	51,495,366	183,504,634	235,000,000	23,500,000	211,500,000	70,640,000	431,600	2025-05-09
		1802	51,495,366	183,504,634	235,000,000	23,500,000	211,500,000	157,040,000	-	2025-06-17
		2002	51,495,366	183,504,634	235,000,000	23,500,000	211,500,000	149,670,000	48,900	2025-07-06

	0103	2003	51,495,366	183,504,634	235,000,000	23,500,000	211,500,000	-	-	
		2004	50,399,720	179,600,280	230,000,000	23,000,000	207,000,000	-	-	
		2502	47,331,911	168,668,089	216,000,000	21,600,000	194,400,000	-	-	
	0104	0102	46,784,088	166,715,912	213,500,000	21,350,000	192,150,000	149,670,000	48,900	2025-08-13
		0304	48,427,557	172,572,443	221,000,000	22,100,000	198,900,000	149,670,000	48,900	2025-10-01
		0602	50,837,978	181,162,022	232,000,000	23,200,000	208,800,000	112,170,000	299,000	2025-05-22
		0604	49,961,461	178,038,539	228,000,000	22,800,000	205,200,000	157,040,000	-	2025-05-27
		0904	50,837,978	181,162,022	232,000,000	23,200,000	208,800,000	-	-	
		1801	50,837,978	181,162,022	232,000,000	23,200,000	208,800,000	-	-	
		1804	50,837,978	181,162,022	232,000,000	23,200,000	208,800,000	149,670,000	48,900	2025-07-02
	0105	0103	43,935,408	156,564,592	200,500,000	20,050,000	180,450,000	149,670,000	48,900	2025-06-18
		0203	45,250,183	161,249,817	206,500,000	20,650,000	185,850,000	70,640,000	431,600	2025-09-05
		0502	47,222,346	168,277,654	215,500,000	21,550,000	193,950,000	-	-	
		0904	47,660,604	169,839,396	217,500,000	21,750,000	195,750,000	-	-	
		1003	48,756,250	173,743,750	222,500,000	22,250,000	200,250,000	70,640,000	431,600	2025-07-25
		1303	48,756,250	173,743,750	222,500,000	22,250,000	200,250,000	-	-	
		1701	47,660,604	169,839,396	217,500,000	21,750,000	195,750,000	149,670,000	48,900	2025-08-23
		1803	48,756,250	173,743,750	222,500,000	22,250,000	200,250,000	-	-	
		2004	47,660,604	169,839,396	217,500,000	21,750,000	195,750,000	149,670,000	48,900	2025-03-25
		2203	48,756,250	173,743,750	222,500,000	22,250,000	200,250,000	-	-	
60		2204	47,660,604	169,839,396	217,500,000	21,750,000	195,750,000	-	-	
	0106	0403	49,304,074	175,695,926	225,000,000	22,500,000	202,500,000	157,040,000	-	2025-06-26
		0601	49,413,638	176,086,362	225,500,000	22,550,000	202,950,000	70,640,000	431,600	2025-07-04
		1104	50,399,720	179,600,280	230,000,000	23,000,000	207,000,000	157,040,000	-	2025-07-08
		1202	51,495,366	183,504,634	235,000,000	23,500,000	211,500,000	-	-	
		1302	51,495,366	183,504,634	235,000,000	23,500,000	211,500,000	70,640,000	431,600	2025-07-02
		1703	51,495,366	183,504,634	235,000,000	23,500,000	211,500,000	-	-	
		2004	50,399,720	179,600,280	230,000,000	23,000,000	207,000,000	149,670,000	48,900	2025-01-10
		2201	50,399,720	179,600,280	230,000,000	23,000,000	207,000,000	157,040,000	-	2025-05-25
		2503	47,331,911	168,668,089	216,000,000	21,600,000	194,400,000	-	-	
	0107	0102	47,222,346	168,277,654	215,500,000	21,550,000	193,950,000	-	-	
		0304	48,865,815	174,134,185	223,000,000	22,300,000	200,700,000	-	-	
		0701	50,837,978	181,162,022	232,000,000	23,200,000	208,800,000	157,040,000	-	2025-06-24
		0804	51,495,366	183,504,634	235,000,000	23,500,000	211,500,000	157,040,000	-	2025-11-06
		1203	53,029,270	188,970,730	242,000,000	24,200,000	217,800,000	157,040,000	-	2025-10-07
		1303	53,029,270	188,970,730	242,000,000	24,200,000	217,800,000	70,640,000	431,600	2025-05-23
		1502	53,029,270	188,970,730	242,000,000	24,200,000	217,800,000	149,670,000	48,900	2025-06-25
		1701	51,933,624	185,066,376	237,000,000	23,700,000	213,300,000	-	-	
		2103	53,029,270	188,970,730	242,000,000	24,200,000	217,800,000	70,640,000	431,600	2025-06-26
	0108	0304	45,250,183	161,249,817	206,500,000	20,650,000	185,850,000	-	-	
		0401	45,688,441	162,811,559	208,500,000	20,850,000	187,650,000	157,040,000	-	2025-09-02
		0702	48,208,427	171,791,573	220,000,000	22,000,000	198,000,000	-	-	

60	0108	0903	48,756,250	173,743,750	222,500,000	22,250,000	200,250,000	70,640,000	431,600	2025-08-09
		0904	47,660,604	169,839,396	217,500,000	21,750,000	195,750,000	157,040,000	-	2025-08-31
		1402	48,756,250	173,743,750	222,500,000	22,250,000	200,250,000	-	-	
		1404	47,660,604	169,839,396	217,500,000	21,750,000	195,750,000	70,640,000	431,600	2025-07-03
		1703	48,756,250	173,743,750	222,500,000	22,250,000	200,250,000	-	-	
		2202	48,756,250	173,743,750	222,500,000	22,250,000	200,250,000	-	-	
		2301	47,660,604	169,839,396	217,500,000	21,750,000	195,750,000	70,640,000	431,600	2025-07-15
	0109	0102	45,578,877	162,421,123	208,000,000	20,800,000	187,200,000	149,670,000	48,900	2025-09-10
		0604	48,646,686	173,353,314	222,000,000	22,200,000	199,800,000	149,670,000	48,900	2025-06-29
		0702	50,180,590	178,819,410	229,000,000	22,900,000	206,100,000	70,640,000	431,600	2025-06-26
		0902	50,728,413	180,771,587	231,500,000	23,150,000	208,350,000	-	-	
		1002	50,728,413	180,771,587	231,500,000	23,150,000	208,350,000	149,670,000	48,900	2025-06-20
		1102	50,728,413	180,771,587	231,500,000	23,150,000	208,350,000	-	-	
		1503	50,728,413	180,771,587	231,500,000	23,150,000	208,350,000	149,670,000	48,900	2025-10-15
		1602	50,728,413	180,771,587	231,500,000	23,150,000	208,350,000	157,040,000	-	2025-07-03
		1603	50,728,413	180,771,587	231,500,000	23,150,000	208,350,000	149,670,000	48,900	2025-06-23
		1702	50,728,413	180,771,587	231,500,000	23,150,000	208,350,000	70,640,000	431,600	2025-07-12
		2203	50,728,413	180,771,587	231,500,000	23,150,000	208,350,000	-	-	
	0110	0102	47,551,040	169,448,960	217,000,000	21,700,000	195,300,000	-	-	
		0103	47,551,040	169,448,960	217,000,000	21,700,000	195,300,000	149,670,000	48,900	2025-01-13
		0203	49,304,074	175,695,926	225,000,000	22,500,000	202,500,000	-	-	
		0301	49,304,074	175,695,926	225,000,000	22,500,000	202,500,000	157,040,000	-	2025-06-12
		0302	50,399,720	179,600,280	230,000,000	23,000,000	207,000,000	157,040,000	-	2025-06-12
		0602	51,933,624	185,066,376	237,000,000	23,700,000	213,300,000	149,670,000	48,900	2025-07-30
		0804	51,933,624	185,066,376	237,000,000	23,700,000	213,300,000	-	-	
		0903	53,029,270	188,970,730	242,000,000	24,200,000	217,800,000	-	-	
		1003	53,029,270	188,970,730	242,000,000	24,200,000	217,800,000	157,040,000	-	2025-06-08
		1304	51,933,624	185,066,376	237,000,000	23,700,000	213,300,000	-	-	
		1603	53,029,270	188,970,730	242,000,000	24,200,000	217,800,000	157,040,000	-	2025-06-19
		1604	51,933,624	185,066,376	237,000,000	23,700,000	213,300,000	157,040,000	-	2025-10-22
		2101	51,933,624	185,066,376	237,000,000	23,700,000	213,300,000	-	-	
		2201	51,933,624	185,066,376	237,000,000	23,700,000	213,300,000	-	-	
		2203	53,029,270	188,970,730	242,000,000	24,200,000	217,800,000	70,640,000	431,600	2025-06-24
		2204	51,933,624	185,066,376	237,000,000	23,700,000	213,300,000	157,040,000	-	2025-05-01
		2303	53,029,270	188,970,730	242,000,000	24,200,000	217,800,000	-	-	
		2404	51,933,624	185,066,376	237,000,000	23,700,000	213,300,000	157,040,000	-	2025-07-23
	0111	0203	47,879,734	170,620,266	218,500,000	21,850,000	196,650,000	-	-	
		0501	48,865,815	174,134,185	223,000,000	22,300,000	200,700,000	137,660,000	129,100	2025-04-01
		0503	49,961,461	178,038,539	228,000,000	22,800,000	205,200,000	149,670,000	48,900	2025-09-15
		0803	51,495,366	183,504,634	235,000,000	23,500,000	211,500,000	-		
		1503	51,495,366	183,504,634	235,000,000	23,500,000	211,500,000	-	-	
		1603	51,495,366	183,504,634	235,000,000	23,500,000	211,500,000	149,670,000	48,900	2025-08-24

60	0111	2002	51,495,366	183,504,634	235,000,000	23,500,000	211,500,000	-	-	
		2201	50,399,720	179,600,280	230,000,000	23,000,000	207,000,000	-	-	
		2402	51,495,366	183,504,634	235,000,000	23,500,000	211,500,000	-	-	
		2501	46,455,394	165,544,606	212,000,000	21,200,000	190,800,000	-	-	
	0112	0101	43,497,149	155,002,851	198,500,000	19,850,000	178,650,000	-	-	
		0103	44,373,666	158,126,334	202,500,000	20,250,000	182,250,000	-	-	
		0201	45,031,054	160,468,946	205,500,000	20,550,000	184,950,000	157,040,000	-	2025-10-06
		0203	45,907,571	163,592,429	209,500,000	20,950,000	188,550,000	157,040,000	-	2025-09-15
		0702	48,865,815	174,134,185	223,000,000	22,300,000	200,700,000	157,040,000	-	2025-06-12
		1204	48,427,557	172,572,443	221,000,000	22,100,000	198,900,000	-	-	
		1404	48,427,557	172,572,443	221,000,000	22,100,000	198,900,000	-	-	
		1603	49,413,638	176,086,362	225,500,000	22,550,000	202,950,000	-	-	
		1704	48,427,557	172,572,443	221,000,000	22,100,000	198,900,000	157,040,000	-	2025-07-18
		2101	48,427,557	172,572,443	221,000,000	22,100,000	198,900,000	149,670,000	48,900	2025-10-14
		2201	48,427,557	172,572,443	221,000,000	22,100,000	198,900,000	157,040,000	-	2025-05-28
		2202	49,413,638	176,086,362	225,500,000	22,550,000	202,950,000	157,040,000	-	2025-05-14
		2203	49,413,638	176,086,362	225,500,000	22,550,000	202,950,000	-	-	
		2504	44,373,666	158,126,334	202,500,000	20,250,000	182,250,000	157,040,000	-	2025-07-13
84	0113	0601	68,919,583	237,080,417	306,000,000	30,600,000	275,400,000	-	-	
		0704	69,595,266	239,404,734	309,000,000	30,900,000	278,100,000	-	-	
		1003	72,410,608	249,089,392	321,500,000	32,150,000	289,350,000	-	-	
		1402	72,410,608	249,089,392	321,500,000	32,150,000	289,350,000	-	-	
		1502	72,410,608	249,089,392	321,500,000	32,150,000	289,350,000	-	-	
	0114	0104	61,036,624	209,963,376	271,000,000	27,100,000	243,900,000	200,280,000	60,600	2025-04-16
		1203	69,144,811	237,855,189	307,000,000	30,700,000	276,300,000	96,820,000	562,500	2025-07-10
		1503	69,144,811	237,855,189	307,000,000	30,700,000	276,300,000	209,410,000	-	2025-05-22
		1504	68,131,287	234,368,713	302,500,000	30,250,000	272,250,000	-	-	
		1602	69,144,811	237,855,189	307,000,000	30,700,000	276,300,000	-	-	
		1603	69,144,811	237,855,189	307,000,000	30,700,000	276,300,000	209,410,000	-	2025-08-24
		1704	68,131,287	234,368,713	302,500,000	30,250,000	272,250,000	209,410,000	-	2025-05-01
	0115	0303	68,919,583	237,080,417	306,000,000	30,600,000	275,400,000	-	-	
		0603	70,946,630	244,053,370	315,000,000	31,500,000	283,500,000	209,410,000	-	2025-06-24
		1104	71,734,926	246,765,074	318,500,000	31,850,000	286,650,000	209,410,000	-	2025-05-29
		1403	73,086,290	251,413,710	324,500,000	32,450,000	292,050,000	199,440,000	-	2025-05-25
	0116	0203	66,779,923	229,720,077	296,500,000	29,650,000	266,850,000	209,410,000	-	2025-10-23
		0302	68,243,901	234,756,099	303,000,000	30,300,000	272,700,000	-	-	
		0401	67,568,219	232,431,781	300,000,000	30,000,000	270,000,000	-	-	
		0801	70,946,630	244,053,370	315,000,000	31,500,000	283,500,000	-	-	
		0804	70,946,630	244,053,370	315,000,000	31,500,000	283,500,000	200,280,000	60,600	2025-08-06
		1001	70,946,630	244,053,370	315,000,000	31,500,000	283,500,000	146,580,000	-	2025-07-23
		1004	70,946,630	244,053,370	315,000,000	31,500,000	283,500,000	200,280,000	60,600	2025-11-17
		1102	72,410,608	249,089,392	321,500,000	32,150,000	289,350,000	-	-	

84	0116	1304	70,946,630	244,053,370	315,000,000	31,500,000	283,500,000	-	-	
		1502	72,410,608	249,089,392	321,500,000	32,150,000	289,350,000	209,410,000	-	2025-06-04
		1702	72,410,608	249,089,392	321,500,000	32,150,000	289,350,000	96,820,000	562,500	2025-05-29
	0117	0202	64,077,194	220,422,806	284,500,000	28,450,000	256,050,000	200,280,000	60,600	2025-10-16
		0602	67,455,605	232,044,395	299,500,000	29,950,000	269,550,000	200,280,000	60,600	2025-08-30
		0701	66,667,309	229,332,691	296,000,000	29,600,000	266,400,000	-	-	
		0902	69,144,811	237,855,189	307,000,000	30,700,000	276,300,000	-	-	
		1301	68,131,287	234,368,713	302,500,000	30,250,000	272,250,000	200,280,000	60,600	2025-07-12
	0118	0602	71,734,926	246,765,074	318,500,000	31,850,000	286,650,000	-	-	
		0802	73,874,586	254,125,414	328,000,000	32,800,000	295,200,000	-	-	
		0803	73,874,586	254,125,414	328,000,000	32,800,000	295,200,000	-	-	
		1102	74,550,268	256,449,732	331,000,000	33,100,000	297,900,000	209,410,000	-	2025-05-27
	0119	0404	68,243,901	234,756,099	303,000,000	30,300,000	272,700,000	-	-	
		1002	73,874,586	254,125,414	328,000,000	32,800,000	295,200,000	-	-	
		1004	72,410,608	249,089,392	321,500,000	32,150,000	289,350,000	96,820,000	562,500	2025-07-02
	0120	0902	69,144,811	237,855,189	307,000,000	30,700,000	276,300,000	209,410,000	-	2025-06-03
		1302	69,820,493	240,179,507	310,000,000	31,000,000	279,000,000	209,410,000	-	2025-07-27

- 평형 환산 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광주광역시북구청(공동주택과-14578호) 분양전환승인된 분양전환금액을 적용 하였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계약금,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함.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대한 선납할인은 불가하므로 납부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내·외부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 상태대로 분양하는 주택이므로 당첨자 본인이 주택개방일(※당첨자에 한함)에 세대 내 시설물 등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물(보일러,벽지,장판,싱크대, 세대열쇠등)의 파손, 노후, 미비 및 청소불량 등을 사유로 하자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입주자가 설치한 부합물은 당사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분양가격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발코니는 전 세대가 확장형으로 시공 완료되었고,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은 별도의 추가 선택품목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잔금 금융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본 계약체결 후 은행과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입주예정자는 입주 시 단지관리운영을 위한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영업소로 확인 바랍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4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 요건을 구비한 분.

구 분	청약관련 신청자격	
신청 순위	1순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2024.10.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예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분의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산정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은 ① 순위별 자격요건,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 거주자 ③ 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 순차, ④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측 세대 구분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 분	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 순차	
동일순위 내 경쟁시	1순위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2024.11.01. 이후 납부한 금액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 산정) 2) 저축 총액이 많은 자 3) 추첨(1순위 당첨자 결정순차가 동일한 경우)
	2순위	추첨

※ 주택소유 및 과거당첨사실 판단 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배우자분리세대 포함)

■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결정함.**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1년이상 계속 거주신청자가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신청자 및 전라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예비순번을 선정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현장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한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5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2025.02.20.(목)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5.02.21.(금) 09:00~17:30		

※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일시: 2025.02.27.(목)	• 일시 - 2025.03.10.(월) ~ 12(수) (10:00~16:00) • 장소 - 당사 영업소 [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287, 상가동 204호 (풍영리버빌아파트)]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2.27.(목) ~ 2025.03.08(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2.27.(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일정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비 고
당첨자	일반공급	2025.03.08.(토) ~ 2025.03.09.(일)(10:00 ~ 16:00)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당사 영업소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287, 상가동 204호(풍영리버빌아파트)]	
예비입주자	일반공급	2025.03.08.(토) ~ 2025.03.09.(일)(10:00 ~ 16:00) ※ 변동시 추후 통보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등 추가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도 서류제출기간에 아래에 해당되는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입주자 선정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이 안될 경우 제출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 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O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군복무기간 명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O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등(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O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O	무주택 소명서류	부적격자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당첨사실 소명서류	부적격자	

8 계약일정 및 구비서류 등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비 고
당첨자	25.03.10.(월) ~ 12(수) (10:00~16:00)	- 사업주체 영업소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287, 상가동 204호 (풍영리버빌아파트)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예비입주자 추첨 및 계약일정은 당첨자 계약 및 부적격소명 완료 후 별도 공지 예정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O		①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O		②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O		③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사전 서류접수기간 내 제출한 경우 제외
	O		④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본인	• 계약시 당사에서 출력
	O		⑥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사본)	본인	• [부동산 분양계약관련 전자수입인지 구매] - 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우편물 취급소 불가), 은행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 시 사본 첨부 - 인지세의 경우 주택공급금액과 발코니 확장 금액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을 포함 - 인지세 과세 기준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수입인지 가격 15만원
		O	⑦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O	⑧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서류	O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②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

9 기타사항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901-535664	(주)부영주택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입금방법 : 101동 101호 홍길동 당첨자의 경우 상기 계좌 입금시 입금자명 홍길동101-101으로 입금 바람)
※ 상기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떤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하오니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기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 대출 안내

• 잔금 대출관련 내용은 관련정책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주체를 통한 집단대출이 불가하며,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융자금(주택도시기금)

(단위:천원)

구 분	60	84
주택도시기금	68,000	90,000

• 융자금은 당사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이며, 계약자는 잔금 납부 시 주택도시기금 전액을 일시납 또는 해당 은행에서 계약자 명의로 대환 대출(당사 융자금을 분양계약자 명의로 전환하는 절차)하여야 합니다.
• 융자금 대환을 희망하시는 계약자는 융자금을 수탁·관리하는 지정은행(향후 계약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에 내방하시어 융자금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출로 진행하실 경우 이자비용 납부 최소화 및 계약진행의 편의성을 위해 잔금납부일과 대환대출 설정일을 동일한 날로 지정하여 진행하므로 원하시는 잔금납부일 최소 2주 전에 해당 은행에 내방하시어 대환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출로 진행하여 융자금 채무자 명의가 당사에서 분양계약자로 변경될 경우 융자금 수탁·관리 은행은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주택도시기금 상환(일시납) 세대는 해당 없습니다).
• 융자금은 일시불 상환 가능하며 일시불 상환 시 대환절차(근저당 설정등기)는 불필요합니다. 세대별 융자금액·상환기간·이자율 등은 계약 시기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주택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당첨세대 방문확인 계약

• 본 아파트는 사용승인 이후에 입주자모집을 하는 주택으로써 계약체결 이전에 실제 계약대상인 세대를 확인한 이후에 계약가능.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당첨자 계약체결하시기 이전에 아래의 기간동안 실제 당첨된 세대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세대방문기간 : 2025.03.08.(토) ~ 2025.03.09.(일) [2일간 / 시간 : 10:00 ~ 16:00]

■ 입주지정기간 : 2025년 03월 13일~ 04월 13일까지

•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열쇠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기존 임차인과 상호 협의 후 계약만기가 도래되어 세대가 퇴거 한 후 실입주가 가능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농구장 1개, 배드민턴장 2개), 문고 등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 업 주 체	시 공 회 사
상 호 명	㈜ 부 영 주 택	㈜ 부 영 주 택
주 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등 록 번 호	110111 - 4252188	110111 - 4252188

■ **홈페이지 :** http://sarangeuro.co.kr

■ **영업소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287, 상가동 204호(풍영리버빌아파트)

■ **분양문의 : ☎ 1577-5533, ☎ 영업소 : 062)959-4025**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영업소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단지 조감도 및 배치도

조감도	배치도

■ 세대 평면도

구 분	60	84
세 대 평면도		
세 대 평면도		